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8.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8호로 2021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영등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의미 규정(안 제2조)
- 나.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다. 가맹점의 등록취소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라. 상품권 잔액 환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2021. 5. 27. ~ 6. 16./20일 간)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5.1. 제정, 2020.7.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이 법률의 근거가 없고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법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정하였음.
- 안 제7조는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음.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안 제10조는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0퍼센트 이상 사용하였을 시 환급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이 2020년 1월 17일 첫 출시되었음.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 판매가 확대되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사용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나 그동안 근거 법률 없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품권제도가 운영됨에 따른 한계가 있었음.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법 타당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여짐.

참 고 자 료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